

소 장

원 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202-81-*****)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17 (역삼동, 케이비손해보험빌딩)
대표이사 양종희
(전화: 02-6900-2668)

피 고 서울특별시
시장권한대행 부시장 서정협

구상금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501,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07.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 일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 관계

원고는 자동차보험 등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소외 주식회사 더메리트(이하 "피보험자"라 하겠습니다)와 그의 소유 06저8235호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하겠습니다)에 대하여 자동차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사고장소 올림픽대로의 관리 주체입니다.

2. 피고의 불법행위 및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사고 일시 : 2020년 07월 14일 13:35경

나. 사고 장소 : 서울시 강서구 염창동 올림픽대로 상

다. 사고 내용 : 원고차량은 위 사고장소 여의도에서 김포공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로 정상 주행하던 중 도로 4차로 좌측편 포트홀에 원고차량 좌측 앞바퀴가 빠지며 타이어가 파손된 사고입니다.

3. 원고의 보상책임의 발생과 보험금 지급

가. 본건 사고는 자동차보험 보통약관상 규정된 보험사고에 해당하므로 보험자인 원고는 피보험자에 대해 법률상 손해액을 동 약관의 규정에 따라 보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나. 따라서 이 사고로 인하여 원고차량의 수리비 701,800원이 발생하였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공제한 501,800원을 원고차량을 수리한 소외 주식회사 한독모터스 방배영업소에 최종 지급하였습니다.

4. 원고의 구상권 대위취득

원고가 이와 같이 자기차량손해의 담보로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원고는 피보험자가 피고에 대해 가지고 있는 권리를 상법 제682조에 의거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5. 구상범위

전기한 바와 같이 원고는 원고차량 수리비의 손해에 대한 보상으로 501,8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한편, 피고는 도로에 차량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나, 사고지점에는 도로가 파인 포트홀이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거하지 않고 방치한 과실을 피고측 100%로 봄이 상당합니다. 따라서 보험자인 원고가 피고에 대해 구상할 금액은 501,800원정 이 됩니다.

6. 결 론

이에 따라 상기 501,8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지급한 다음날부터 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12%의 각 비율에 의한 법정지연 손해금의 청구하게 이르게 되었던 바입니다.

입 증 방 법

- | | |
|-----------|------------|
| 1. 갑 제1호증 | 자동차보험계약조회문 |
| 2. 갑 제2호증 | 원고차량 파손 사진 |

- 3. 갑 제3호증 원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 4. 갑 제4호증 보험금지급내역서
- 5. 갑 제5호증 원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 부 서 류

-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020.08.03

원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대표이사 양종희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열람용